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OCBC은행 서울지점

2. 제재조치일 : 2025. 1. 9.

3. 제재조치내용

제재대상	제재내용
기 관	개선사항 3건

4. 제재대상사실

가. 개선사항

(1) 딜링부서 내 대직 관련 내부통제 개선

트레이딩 계정(trading book)과 은행 계정(banking book)은 별도의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고, 은행 조직 구조상 관리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소한 데스크나 딜러에 의한 분리는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OCBC은행 서울지점(이하 '은행')의 딜링 부서인 A부서 내에서 ⓐ 데스크와 ⓑ 데스크가 구분되어 있으나, 각 데스크가 1명의 인원으로 구성되어 휴가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 시 양 데스크의 트레이더가 서로의 업무를 대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데스크 트레이더 중 1인이 휴가 시 대직 중인 트레이더가 트레이딩 및 은행 양 계정 거래를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통제절차가 없어 계정간 자전거래 등 금융사고 발생 및 이해상충 소지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트레이딩 계정 및 은행 계정 담당 트레이더의 휴가 시 서로 간의 대직을 제한하거나 대직 업무 시 필요 최소한의 업무만 수행하게 하고, 해당 업무의 적정 여부를 사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이를 관련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2) 부동산 PF대출 관련 건전성 분류절차 개선

은행은 전국은행연합회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스크관리 지침」에 따라 부동산 PF대출 취급 시 매분기별로 PF사업장별 사업성을 평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건전성을 분류*하고 충당금을 적립해야 한다.

* 사업성 평가 결과를 4등급(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으로 구분하여 건전성 분류 필요

하지만 은행의 내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에는 차주 및 담보 평가를 근거로 한 등급 산정기준만 규정되어 있고, 부동산 PF대출 취급과 관련하여 프로젝트의 사업성에 따른 건전성 분류기준은 규정되어 있지 않아, 부동산PF 사업성 악화 등으로 인한 건전성 분류 조정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우려가 있다.

<조치할 사항>

향후 부동산 PF대출에 대해서는 여신감리 시 사업성평가 결과를 포함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적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산건전성 조정 관련 기준 등을 내규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3) 내규「위험관리기준」구체화 및 보완 등 개선

은행은 위험을 적시에 인식·평가·감시·통제하기 위하여「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2조 등에서 정하는 세부적인 사항을 포함한 위험관리기준을 마련하여야 하며, 이러한 위험관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타 내규로부터 준용하는 방식으로 포함하는 경우, 각 세부적인 사항에 해당하는 준용 내규 및 내용을 동 위험관리기준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체계적인 리스크관리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은행은 내규「위험관리기준(Standard Risk Management)」을 마련하면서 세부적인 사항은 본점 내규 전문을 전자파일*의 형태로 포함하거나 경로를 링크하는 방법으로 준용하고 있어 은행 임직원이 리스크관리 방침 및 절차 등을 파악하여 적용하기 어려울 소지가 있다.**

* 본점 내규 문서 파일(.pdf) 또는 압축 파일(.zip)을 은행 위험관리기준 본문에 첨부하고 '본점 규정을 준용한다'는 취지로 기술

** (예) 자산부채관리위원회(ALCO)가 시장리스크 한도 등 주요 사항을 결정하고 있음에도 동 위원회가 리스크전담 조직에 제외되어 있고, 은행의 리스크한도 설정 및 승인절차 등이 반영되어 있지 않음

<조치할 사항>

은행 내규「위험관리기준」의 세부적인 사항을 본점 내규로부터 준용하는 경우 해당 준용 내규명 및 준용하는 부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은행의 리스크관리 방침, 절차 등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하시기 바랍니다.